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 1257 호 2020. 10. 8.(목)

<b>훈 령</b> ○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2호[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]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고 시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175호[하천 점용 허가 고시]····· <b>9</b>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177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-180호[하천 점용 협의 고시]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공 고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076호[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]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119호[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<b>22</b>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122호[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<b>30</b>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130호[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] <b>36</b>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134호[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]··········· <b>44</b>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135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···· <b>50</b>
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138호[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·········· <b>56</b>
<ul> <li>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</li> <li>□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</li> </ul>
회
람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등 건 (인)

2020년 10월 8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72호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인권"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- 2. "체육인"이란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"구"라 한다)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를 말한다.
- 3. "인권보장 정책"이란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·정책 등 인권침해 (성희롱, 성폭행, 직장 내 갑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말한다.

- 4. "인권보호관"이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장 및 담당자를 말하며, 필요한 경우 스포츠 인권보호의 효율성을 위해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는 직원을 말하다.
- 5. "인권감수성"이란 사회에서의 불합리한 관행, 제도 등을 인권 문제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.
- 6. "성희롱"이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가.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  - 나.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- 7. "성폭력"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구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로 한다.
-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체육인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장 정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으며,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구청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

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2. 구청장은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관계부서와 협력하여야 한다.
- 3. 구청장은 5년마다 스포츠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.
- 제5조(인권침해 신고·상담 등)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조직과 인권침해 상담창구(이하 "상담창구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② 누구든지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, 인권보호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실시 또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- ③ 구청장은 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 직원 중 2명 이상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권보호관은 남성과 여성 직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④ 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- 1.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상담
    - 2.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접수 · 조사
    - 3. 인권침해 사건 처리, 관련 부서 간 협조 · 조정에 관한 사항
    - 4.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    - 5.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, 홍보 업무
  - ⑤ 인권침해 예방 담당부서장(이하 "담당부서장" 이라 한다)은 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침해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,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사건 처리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- ⑥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, 신고 및 상담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조사 및 징계 등) ① 인권침해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상담창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인권침해 사건 접수신청서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인권보호관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한 사안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, 조사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  - ④ 담당부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⑤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  - ⑥ 담당부서장은 조사 진행상황을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, 온라인,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
  - ⑦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감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, 징계,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- ⑧ 징계기준은「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」제53조 및 제54조를 따른다.

- 제7조(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) ① 구청장은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등을 분리하고,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대상자에게 상담, 조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.
  - ③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④ 인권보호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- 제8조(조사결과의 보고 등) 인권보호관은 인권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후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사이버 고충상담 창구) 구청장은 인권침해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인권교육 등 실시) ① 구청장은 소속 체육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 감수성 정립을 위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신규 입단 체육인에 대하여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및 대한 체육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

부 칙

보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

[별지 제1호서식]

인권침해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								
접수	접수	신	l청인	인권침해 내용	처리결과	회신	확	인
번호	일자	성명	소속부서	건년검에 대중	시니걸피	일자	담당	과장

[별지 제2호서식]

	전수번호         접수번호           인권침해 사건 접수신청서         담당자						
		성명		소속			
	신청인	(성별)		직급			
	 [	연락처					
		(e-mail)					
	대리인	성명		소속			
<b>⊏</b> L.1.∓1	※ 대리인이	(성별)		직급			
당사자	, 세디전이 신청하는	연락처					
	 경우	(e-mail)					
	피신청인 (행위자)	성명		소속			
		(성별)		직급			
		연락처					
		(e-mail)					
신 청 취 지	※ 6하원칙에 의해 문제	가 되는 행위, 지속	수성의 여부, 목격자 혹	은 증인의 유무 등	을 기록합니다.		
요구사항							
	위 신청인은	스포츠 인권	침해 사건의 조	사를 신청합니	·		
		년	월 일				
	고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						
	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
			울신	난광역시 북	구청장 귀하		

#### ◆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# 1. 제정이유

○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8조의2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울산 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

#### 2. 주요내용

- 스포츠 인권보호 규정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제1조 ~ 제3조)
-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책무 규정(제4조)
- 인권침해 신고·상담 등(제5조)
- 조사 및 징계 등(제6조)
- 인권교육 등 실시(제10조)

공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- 175호

# 하천 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동 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에스케이텔레콤(주) 동부 Infra 본부장 나. 주소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58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공작물의 설치(통신주)

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천곡동 1032-9번지

나. 면적 : 영구 1m²

5.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

영구 : 2020. 9. 28. ~ 2024. 12. 31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- 177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 종전주소	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당수골길 27	호계동 501	2020. 10. 8.	건축물 멸실
화암길 35-7	산하동 13-2	2020. 10. 8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**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**2020. 10. 8.**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# 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- 180호

# 하천 점용 협의 고시

「하천법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동 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(유채단지 및 임시주차장 조성)

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천곡동 1020-20번지 외 2필지

나. 면적 : 일시 63,698 m²

5. 점용 협의 유효기간

영구: 2020. 10. 7. ~ 2021. 4. 30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076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제1항 및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제정이유

「청년기본법」및 동법 시행령 시행(2020. 8. 5.)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,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·운영, 청년센터 및 청년시설 설치 등을 명시한 자치법규가 필요하므로「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」를 제정 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 등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청년정책위원회(안 제7조부터 제11조)
- 마. 청년정책협의체(안 제12조)

- 바. 청년센터 및 청년시설 설치 · 운영(안 제13조, 제14조)
- 사. 청년의 참여확대, 능력개발, 고용확대 등(안 제15조부터 제20조)
- 아.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(안 제21조)
- 자.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(안 제22조)

#### 3. 제정 조례안 : 붙임 참조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기획예산 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사항

#### ※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(우)44248
- 전화번호 : 052-241-7154
- 팩스번호 : 052-241-7109
- o E-mail: ssunmi0825@korea.kr
  - 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(https://www.bukgu.ulsan.kr) "고시공고"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					
조례명	울산광역시 북구	<sup>1</sup> 청년 기본 조례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	
·   C	주 소				
개인정보취급		제 15조 1항(개인정 를 제공할 것을 동	병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의합니다. □ 동:	- 1	
검토의견 (의견제출내용)					
「울산광역시 - 제출하고자 합니		ː례」제정안의 입법 <sup>(</sup>	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	이끄	
		2020년 10월	일		
		제출자	(서명 또는 인)		
울산광역	<sup>ᅾ시 북구청장</sup>	귀하			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·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,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청년"의 범위는「청년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 적으로 적용한다.
  - 2. "청년정책"이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, 권익증진,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.
  - 3. "청년단체"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, 권익증진,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 - 4. "청년활동"이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.
  - 5. "청년시설"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②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)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기본계획에 따라

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공

- 1.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- 2.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
  - 가.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
  - 나.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
  - 다.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
  - 라. 청년의 생활안정
  - 마. 청년 문화·예술의 활성화
  - 바.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
- 3.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
- 4.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·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
- 5.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-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청년정책 기초조사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·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3.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

-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.
-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- 1.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
- 2.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
- 3.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
- 4.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- 5.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0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

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-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.
-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2조(청년정책협의체)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·제안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.
  -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청년센터 설치・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울산 광역시 북구 청년센터(이하 "청년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- 2.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
  - 3. 청년의 취업·진로·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
  - 4.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
  - 5.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
  - 6.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③ 구청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④ 구청장은 제4항의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청년시설 설치·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청년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청년거주 지원시설 : 주거독립이 필요한 청년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2. 청년창업 지원시설 : 청년에게 창업 및 새로운 직업·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3. 청년고용 지원시설 :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4. 그 밖에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
-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청년의 참여확대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청년의 능력개발 등) ① 구청장은 취업 애로 및 정치·사회·경제·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창의적·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7조(청년의 고용확대 등)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④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⑥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18조(청년의 생활안정)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,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제19조(청년 문화·예술의 활성화 등)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·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·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·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·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청년의 권리 보호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·홍보를 실시하거나,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·산하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22조(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
  - 2. 청년 자립 역량 강화
  - 3.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
  - 4.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
  - 5. 청년 관련 연구·조사 활동
  - 6. 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
  - 7. 청년의 권리 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
  - 8.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북구

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119호

#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보

공

「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제1항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제정이유

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 자원 봉사활동 지원·조정하는 기구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(안 제3조)
- 나. 지원단의 구성,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(안 제4조 ~ 제6조)
- 다. 지원단의 설치(안 제7조)
- 라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(안 제8조)
- 마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(안 제9조)

#### 3. 제정 조례안 : 붙임 1

#### 4. 근거법규

- 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7조의2
- 나.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제7조

#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복지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기재 사항 ※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: 붙임 2

- 1)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나. 의견 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  - 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(연암동, 북구청), 4층 복지지원과
  - 2) 전화번호: 052-241-7634
  - 3) 팩스번호: 052-241-7609
  - 4) 전자우편(E-mail) : irg2tmdi@korea.kr
- 다. 이 조례의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https://www.bukgu.ulsan.kr/) "고시공고"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#### [붙임 1]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책무)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- 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업무소관 부서장과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"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  -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  - 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"구"라 한다) 소속 공무워
  - 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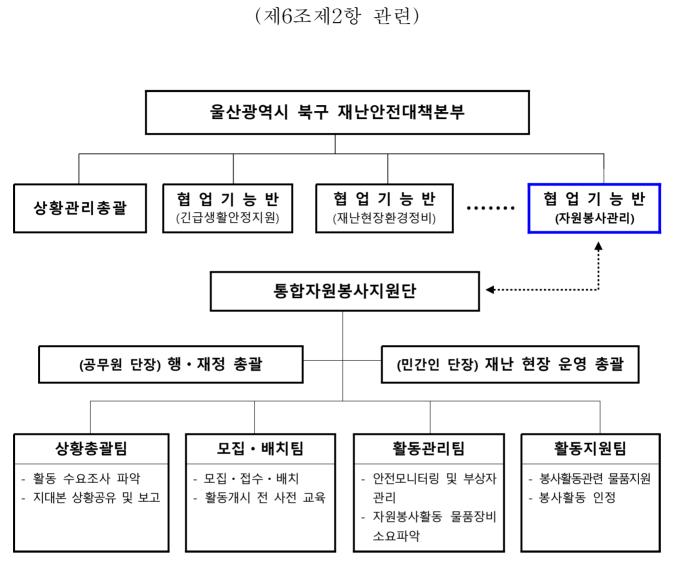
- 3.「재해구호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- 4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5조(단장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  -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  - 1. 상황총괄팀
  - 2. 모집·배치팀
  - 3. 활동관리팀
  - 4. 활동지원팀
  - 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  -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  - 제7조(지원단의 설치)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    - 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  - 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  - 3. 자원봉사자의 규모
  - 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
- 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- 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  - ② 대책본부장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.
  -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  -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.
  -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



#### [별표 2]

##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 구성 (제6조제2항 관련)

구 분		직 위	담 당 사 무	
통합 자원 봉사	공무원	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장	<ul><li>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 행재정 지원 사항 총괄</li><li>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필요 사항 발굴·지원</li></ul>	
지원 단장	민간인	자원봉사센터장	○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·운영관련 현장 총괄	
	상황 총괄팀	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 담당	<ul> <li>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필요사항 발굴</li> <li>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</li> <li>상황공유 및 보고 등</li> <li>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 및 홍보 총괄</li> </ul>	
	020	OEL	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	<ul><li>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</li><li>자원봉사활동 분야, 인원 등 수요 조사</li></ul>
, ,	모집	자원봉사센터 직원	○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총괄	
실 무 팀	배치팀	자원봉사센터 직원	○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지원 - 사전교육, 안내·모집 및 일별·분야별 배치 등	
	활동 관리팀	자원봉사센터 직원	<ul> <li>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</li> <li>안전모니터링(위험요소 관찰), 의료기관과 연계</li> <li>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, 장비 소요 파악</li> <li>자원봉사활동 평가(모니터링, 활동 기록 등)</li> </ul>	
	활동	자원봉사업무 활동 소관 부서 주무관	○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○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	
	지원팀	자원봉사센터 직원	○ 봉사활동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	

#### ※ 비고

-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
- ·재난 규모에 따라 기능 통합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[붙임 2]

	입법예고	사항에 대한	<u></u> 의견서	
조례명	울산광역시 북구 재	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	]원단 구성 및 운영 등c	게 관한 조례
ما سال الماسية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의견 제출자	주 소			
개인정보취급		제15조제1항(개인 <sup>&gt;</sup> .를 제공할 것을 동	정보의 수집·이용)에 - 의합니다.	의거하여 □ 동의
검토의견 (의견제출내용)				

「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2020년 10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-1122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보

공

「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

#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○ 상위법인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도래(2020. 12. 31.)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)
  - 2020년 12월 31일까지 ⇒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연장

#### 3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
- 4. 개정조례안 및 신・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.

#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※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

○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사회복지과 (우)44248

○ 전화번호 : 052-241-7621

○ 팩스번호 : 052-241-7669

○ E-mail : cjhsin1@korea.kr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https://www.bukgu.ulsan.kr) "고시공고"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- 붙임 1.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.
  -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  - 3. 관계법령 1부.
  - 4. 의견서 1부. 끝.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보

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공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020. 10. 8.(목요일)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	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
존속기한은 <u>2020년 12월 31일</u> 까	<u>2025년 12월 31일</u>
지로 한다.	

곳

## 근거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0. 6. 9] [법률 제17388호, 2020. 6. 9, 일부개정]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· 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  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  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>
 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부칙 <제17388호, 2020. 6. 9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"재정안정화기금" 및 "통합관리기금"은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이 법에 따른 "재정안정화 계정" 및 "통합 계정"으로 본다.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연 락 처:

○ 의 견 제 출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	<u></u> 견	비고
그네는 네ㅇ	찬성	반대	T	Ľ	01 14

공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130호

#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제정이유

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업무와 기능(안 제4조)
- 다.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이용대상 및 이용의 제한(안 제11조, 제13조)
- 마.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(안 제12조, 별표)

## 3. 근거법령

- 가.「모자보건법」제15조의17
- 나.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제104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- 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24조

# 4. 제정조례안 : 붙임참조

#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보건소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출처
  - 주소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, 북구보건소
  - 전화번호: 052-241-8244, 팩스번호: 052-241-8245

#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정안은 울산 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#### [붙임]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7에 따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산모"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.
  - 2. "신생아"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.
  - 3. "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"이란「모자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.
- 제3조(위치)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(이하 "공공산후조리원"이라 한다)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5로 60(호계동)에 둔다.
- 제4조(업무와 기능)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분만 직후의 산모나 신생아에게 급식 · 요양과 편의 제공
  - 2.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
  - 3. 산모에 대한 교육·프로그램 등의 운영
  - 4.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
  - 5.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5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·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  - 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
  - 2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  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시설관리공단
  - 4.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 보호와 적정한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.

-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6조(원장 및 직원) ① 공공산후조리원은 원장과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
  - ③ 원장과 일반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7조(수탁자의 선정 등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- ②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·감독 등에 관하여는 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다만, 공공기관 위탁인 경우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제2항에 의거한다.
- 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모성·영유아 등 구민의 생명·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  -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이용료 등 운용자산을 제4조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  -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·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울산광역시 북구에 반환하여야 한다.
  -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  -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복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  - 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

하다.

- ⑧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있다.
- 제9조(위탁의 해지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
  - 2.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- 3.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4.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10조(운영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이용대상)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나,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)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  - 1.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-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 - 4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  - 5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  - 6. 「의료급여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
- 7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
- 8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제4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
- 9.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
- 10.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
-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비율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이용의 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- 1.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. 다만,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,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
  - 3.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
  - 4.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
- 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」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표]

###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(제12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		기준 이용료		
七	1주(6박7일)	2주(13박14일)	3주(20박21일)	
울산광역시 북구 주민	945,000	1,890,000	2,835,000	
타 지역주민	1,039,500	2,079,000	3,118,500	

#### ※ 비고

- 1.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산모 1명 또는 산모 1명과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, 다태아 등의 출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.
- 2. 울산광역시 북구 외 타 지역 주민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기준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.
- 3.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.(단, 국적 미취득 다문화가정의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증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한다.)
- 4.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 ·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.

제 1257 호 공 2020. 10. 8.(목요일) 보

[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]

		의 견 제 출 서		
의견	성명/단체명	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	전화번호	
제출자	주 소			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찬 · 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- 1134호

# 「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주민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제정이유

「건축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각종 점검 대상 중 위임사항 규정(안 제3조 ~ 제6조)
- 나.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다.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라.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·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# 3. 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## 4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

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건축주택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제 출 처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건축주택과
- 전화번호 : 052)241-8026 팩스번호 : 052)241-8019

#### 5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」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##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축물관리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정기점검 대상)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제1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
  - 1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
  - 2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, 같은 조 제16호 가목·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·비디오물감상실업·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
  - 3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
  - 4. 「모자보건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
  - 5. 고시원업[구획된 실(室)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]
  - 6. 「의료법」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
- 제4조(긴급점검 대상)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구청장이 기초 침하,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「울산광역시 건축 조례」제13조제1항에 따른 북구 건축위원회구조전문위원회(이하 "구조전문위원회"라 한다)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
  - 2.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5조(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) ①「건축물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"이란 3층 이하로서

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

-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석축·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.
- 제6조(안전진단 대상)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.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
- 제7조(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)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「건축법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
  - 2. 「건축법」제83조에 따른 공작물
- 제8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) 영 제23조제4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
  - 2.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·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제9조(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(이하 "건축물관리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수 있다.
  -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「건축법」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

- 2.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0조(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)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  - 2.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.
    - 가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감정평가법"이라 한다)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.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- 다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5조, 감정 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-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1257 호 공 2020. 10. 8.(목요일) 보

[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]

		의 견 제 출 서		
의견	성명/단체명	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	전화번호	
제출자	주 소			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찬 · 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135호

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제1항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0월 8일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○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·감액 규정 삭제(안 제21조제4항)
- 3. 개정 조례안 : 붙임 참조

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기획예산 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사항

#### ※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

○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(우)44248

○ 전화번호 : 052-241-7113

○ 팩스번호 : 052-241-7109

#### 5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2020. 10. 8.(목요일)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곳

#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 혅 颜 개 아 정 제21조(실적보고) ① 지방보조사 제21조(실적보고) ① ~ ③ 현행유지 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 연 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방보조사 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. 실적 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 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,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.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때 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<삭제>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 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 할 수 있다.

# 관계법령

#### □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⑦항

제32조의8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

- 1.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2.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- 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4.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(同種)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 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(相計)할 수 있다.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공

[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]

		의 견 제 출 서		
의견	성명/단체명	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	전화번호	
제출자	주 소			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찬·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
공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-1138호

#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『울산 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 2020년 10월 8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- 포상의 종류에 "모범공무원 포상", "공로패"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
- 현재 시행되지 않는 "민주구민질서상"관련 조항 삭제 및 "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"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포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

# 2. 주요내용

가. 포상대상자 개정(안 제2조)

[현행] 공무원·구민(외국인 포함) 및 단체

[개정] 구민(외국인 포함)·기관·단체 및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

나. 포상의 종류 개정(안 제4조)

[현행] 표창장·감사장·상장 및 민주구민질서상

[개정] 표창장 및 표창패, 감사장 및 감사패, 상장 및 상패, 모범공무원 포상, 공로패

- 다. 퇴직직원 공로패 수여 근거 신설(안 제8조)
- 라.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 결격사유 검토사항 신설(안 제10조)
- 마. 공적심의 신설(안 제11조)
- 바. 포상의 대리수령 근거 신설(안 제14조)
- 사. 포상의 취소 관련 내용 신설(안 제16조)

- 아. 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내용 신설(안 제17조)
- 자. 기타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- 차. 별지 서식 정비, 공로패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별지 서식 신설
- 3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「지방공무원법」제79조

#### 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. 10. 28(수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- 다. 제 출 처 : 우)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, 북구청) 【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전화 : 052)241-7213, 팩스 : 052)241-7209】

## 5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- 붙임 1. 의견서 제출 서식 1부.
  - 2. 전부개정조례안 1부.
  - 3. 관계법령 1부. 끝.

# 붙임1 의견서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연 락 처:

○ 의 견 제 출

	찬성	 여부				
조례안 내용	 찬성	··· 반대	이	견	비고	

# 붙임2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포상대상 및 적용범위)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(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기관·단체 및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"구"라 한다) 소속 직원에게 수여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구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·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
  - ② 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수여한다. 다만, 동장도 필요시 수여할 수 있다.
- 제4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(이하 "표창장"이라 한다), 감사장 및 감사패(이하 "감사장"이라 한다), 상장 및 상패(이하 "상장"이라 한다), 모범공무원 포상,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 다만,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
- 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  - 1.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,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·단체
  - 2.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
  - 3.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
- 제6조(감사장)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  - 1.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기관·단체
  - 2.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·단체

- 제7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  - 1. 각종 품평회, 경진대회,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·단체
  - 2. 학술, 예술,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·단체
  - 3.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·단체
- 제8조(공로패)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.
  - 1.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
  - 2.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·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
- 제9조(포상방법 및 부상)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, 그 방법은 포상수여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  -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- 제10조(포상대상자의 추천) ① 포상(상장은 제외한다)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구의 담당관·과장, 직속기관·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. 다만, 구민이 직접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.
  -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공적심의)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제12조(포상시기)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 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.
- 제13조(이중포상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- 제14조(포상의 대리수령)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.
- 제15조(포상대장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.

- 제16조(포상의 취소)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  - 2.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
  - 3.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다만.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- 제17조(포상사실 확인)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,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제 호

표 창 장(패)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표 창 문)

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○ ○ ○ 인

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

감 사 장(패)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감 사 문)

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○ ○ 0 인

[별지 제3호서식]

제 호

상 장(패)

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

(상 장 문)

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〇 〇 〇 엔

[별지 제4호서식]

제 호

공 로 패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공 로 문)

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○ ○ ○ 인

2020. 10. 8.(목요일) 공 보

[별지 제5호서식]

(앞면)

# 공 적 조 서

(1)	성 명	(ই	사)
(2)	생년월일	(3)	군 번 (군인의 경우)
(4)	성 별	(5)	국 적 (외국인의 경우)
(6)	주 소	'	
(7)	직 업	(8)	소 속
(9)	직 급	(10)	) 직 위
(11)	근무기간	(12)	) 공적분야
(13)	공적요지(	50자 내외)	
(14)	 추천훈격	(15	) 추천순위
(11)	,	조 사	
(16)	소 속		) 직 위
(18)	직 급	(19	) 성 명 (인)

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

1201							C	,		<u></u>						2020	. 10. (	).( ¬ <u></u> -
																		(뒷면)
						주	尔	학	력	및	7	성	력					
(20)	년	월	일	(21)	०]		력			(22)	년	월	일		(23)	٥]	력	
				과	거 .	표창	기록	(훈	장•	포장	• 班	창빝	별로	7]	록)			
(24)	년	월	일	(25)	내		용			(26)	년	월	일		(27)	내	용	
							(28	8) 공	<u>-</u> ス	<sup>나</sup> 넉 사	 ಶೃ	-						
l																		

→ 공적조서(을)지 작성 (

)매

2020. 10. 8.(목요일)

공	적	조	서	(을)
$\mathbf{O}$				\ <b>E</b> /

(28) 공 적 사 항

[별지 제6호서식]

# 포 상 대 장

포상 번호	포 상 연월일	포상 기관	소속 또는 주 소	직위 또는 직 급	성명	생년월일	포상하게 된 공적 개 요	부상	주관부서

<sup>※</sup>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 [표창장(모범공무원포상 포함), 상장, 감사장(공로패포함)] 로 구분 기재하며,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.

[별지 제7호서식]

#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

포상 번호	포 상 연월일	포상 종류	포상 기관	소속 또는 주소	직위 또는 직급	성 명	생년월일
	 }하게 된 -적개요						

상기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증명함

년 월 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적인

# 붙임3 관계법령

### [지방자치법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 [지방공무원법]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표창을 행한다.